

충청북도 국가유공자소유자동차 및 건축물에 대한
도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내무위원회

1993. 8. 6

1. 심사경과

가.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나.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1993년 7월 30일

· 회부일자 : 1993년 7월 30일

다. 상정일자 : 제93회 임시회

· 제1차 내무위원회 (1993. 8. 6) 상정,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내무국장 조영창)

가. 제안이유

- 현행 과세면제 조례는 국가유공자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중 상이군경에 한하여만 도세를 과세면제 함으로 인하여
- 동일 법률의 적용을 받는 타 유공자와 조세형평이 맞지 않아 과세면제 범위를 확대 시행하여
-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과 면제대상 범위를 일치시키기 위한 것임.

나. 주요골자

- 면제대상

- 현행 조례에서 상이등급 2급 상이군경중 일부를 제외하던 것을 2급 상이군경은 전부를 면제하고
- 과세면제대상을 국가유공자 예우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과 맞게 재조정 하였음

- 면제세목 :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공동시설세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윤 태 무)

충청북도 국가유공자 소유자동차 및 건축물에 대한 도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현재 국가유공자 예우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상이군경중 상이급수 1급 내지 5급에 해당하는 상이군경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 및 건축물에 대하여 과세면제의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이는 동일 법률의 적용을 받는 타 유공자와 조세 형평이 맞지 않는 상황으로서, 현행 상이등급 2급 상이군경중에서도 일부가 제외되었던 것에 대해 2급 상이군경에 대해서는 전부 면제토록 하는등 과세 면제대상인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공동시설세에 대해 국가 유공자 예우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과 맞게 그 적용대상과 면제대상 범위를 확대 시행하여 일치시키고자 재조정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본 개정조례안은 승인하여 좀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해당사항 없음

5. 토 론 요 지 : 해당사항 없음

6. 심 사 결 과 : 도 원안대로 의결 (참석 7인, 찬성 7인)

7. 소수의견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 국가유공자 소유자동차 및 건축물에 대한 도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 신구조문 대비표